



12

헌법오남자검토연구위원회 보고

제104회기 헌법오남자검토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박종일
서 기 이창수

1. 조직

- 위 원 장 : 박종일
- 회 계 : 조진연
- 서 기 : 이창수
- 위 원 : 김동관, 임만순

2. 회의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19 11. 26(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 박종일 목사
 서 기 : 이창수 목사
 회 계 : 조진연 장로
 - ② 수입사항 처리를 위한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가지기로 하다.
 일 시 : 2020년 6월 8일(월)~9일(화) / 오전 10:30부터
 장 소 : 총회회관 및 글래드강남 코엑스센터
 강 사 : 박병진 목사, 신현만 목사
 기타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0. 6. 8(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워크숍 일시, 장소, 강사를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② 워크숍은 추진계획안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다.
 - ③ 잔무는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다.

3. 사업보고

1) 헌법오남자검토연구 워크숍

- (1) 일 시 : 2020. 6. 8(월) 10:30 ~ 6. 9(화) 12:00
- (2) 내 용

- ① 개최예배 : 사회-이창수 목사, 대표기도-조진영 장로,
설교-소강석 목사(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헌법)
- ② 발 제 : 한국교회헌법문제연구소 박병진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신현만 목사
- ③ 검토 및 연구사항 정리

(3) 결산

수입		지출	
내용	금액	내역	금액
예산	2,771,720원	여 비(위원, 강사 여비) 순서비(설교비, 강의비) 일 비(2일) 숙박비(위원, 강사) 식 비(3식, 간식비) 진행비(장소사용료, 현수막, 출장비 등)	670,000원 900,000원 300,000원 320,320원 261,400원 320,000원
합계	2,771,720원	합계	2,771,720원

헌법오남자검토연구위원회 최종보고

1. 제104회 총회 수임사항

카. 오,낙자 등 오류 개정 관련

- 37) 경기남1노회장 김용철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38) 경기중부노회장 최광영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39) 관서노회장 김용석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40) 군산노회장 라종래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41) 김제노회장 문오현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42) 대경노회장 김두홍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43) 동전주노회장 추형호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44) 목포서노회장 홍석기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45) 목포제일노회장 신안식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46) 무안노회장 이윤동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47) 부천노회장 이세광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48) 빛고을노회장 이재홍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49) 산서노회장 하원주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50) 서광주노회장 노갑춘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51) 서수원2노회장 주만철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52) 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53) 수경노회장 김용수 씨가 현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54) 수도권회장 한태호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55) 순천노회장 장기주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56) 여수노회장 박익현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57) 의산노회장 장병록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58) 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59) 전북서노회장 진용길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60) 전북제일노회장 오창욱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61) 평안노회장 강요한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62) 호남노회장 윤현하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과
- 63) 황해노회장 오종걸 씨가 헌의한 총회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 개정 청원의 건은 5인 검토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위원회 최종결론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총 론	총 론
1. 교황 정치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와 희랍 정교의 정치인 <u>바</u> 교황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1. 교황 정치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와 희랍 정교의 정치인 <u>바</u> 교황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 정치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u>바</u> 감독 교회와 감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2. 감독 정치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u>바</u> 감독 교회와 감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4. 조합 정치 조합 정치는 자유 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 교회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u>그러나</u>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4. 조합 정치 조합 정치는 자유 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 교회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u>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u>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5. 장로회 정치 (2000년판오류, 1960년판오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 <u>18:25,</u>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딤후 1:5, 벘전 5:1, 약 5:14)때에 <u>일찍</u> <u>있던</u>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u>교회의 헌법도</u>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5. 장로회 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 <u>18:25-26,</u> 민 11:16)의 때와 사도(행 14:23, 18:4, 딤후 1:5, 벘전 5:1, 약 5:14) 때 <u>에도</u> <u>있었던</u> 성경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u>교회 헌법도</u>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편성한 것이다.</p>	<p>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p>
<p>제1장 원리(原理) (1930년판의 오류)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p>	<p>제1장 원리(原理)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중추적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p>
<p>제 1 조 양심 자유 (1930년판의 오류) 양심의 주재는 <u> </u>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p>	<p>제 1 조 양심 자유 양심의 주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p>
<p>제 2 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u> </u> 개인 <u> </u> 자유의 일례(一例)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u> </u>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 뿐이다.</p>	<p>제 2 조 교회 자유 1. 전조(前條)에 설명한 바, <u> </u> 개인의 자유와 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一切)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設定)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국가 는 오직 종교적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p>
<p>제 3 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 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 <u> </u> 다.</p>	<p>제 3 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 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치리(治理)하게 하신 것이다.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 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하여야 한다.</p>
<p>제 4 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p>	<p>제 4 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것이니 주 말씀하시되「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맞닿아있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맞물려있어 나누지 못할 것이</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p>제 5 조 직원의 자격 (1922년판의 오류)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性格)과 주의(主義)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규(教規)에 대한 의견(意見)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p>	<p>제 5 조 직원의 자격 제3조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당연히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례를 제정(制定)해야 한다. 그러나 성격(性格)과 주의(主義)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규(教規)에 대한 의견(意見)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p>
<p>제 6 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p>	<p>제 6 조 직원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p>
<p>제 7 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遵奉傳達)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_____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p>	<p>제 7 조 치리권 치리권은 전교회가 친히 행사하든지 그 택하여 세운 대표자가 행사하든지 오직 주의 뜻을 받드는 중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遵奉傳達)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 무오(正確無誤)하고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법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p>
<p>제 8 조 권징 (1930년판의 오류) 교회가 이상(以上)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勸告)와 은총에 있다.</p>	<p>제 8 조 권징 교회가 이상(以上)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안락(安樂)과 복을 증진(增進)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도덕상과 신령상의 것이요, 국법상의 시벌(施罰)이 아닌즉, 그 효력(效力)은 정치의 공정(公正)과 모든 사람의 공인(公認)과 만국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의 권고(勸告)와 은총에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교회</p> <p>제 1 조 교회 설립(設立) (1922년 판의 오류) (1930년판의 오류)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니 나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교회</p> <p>제 1 조 교회 설립(設立)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지금과 이</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 <u>니</u>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후의 만국의 성도이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
제 2 조 교회의 구별(區別) (1930년 판의 오류) 교회에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u>니</u>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제 2 조 교회의 구별(區別) 교회에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이니 그 교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다.
제 3 조 교회 집회(集會) (1922년판의 오류)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 <u>을</u>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 1:22, 계 1:4, 20).	제 3 조 교회 집회(集會) 대중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 <u>께</u> 경배할 수 없으니 각처에 지교회를 설립하고 회집하는 것이 사리(事理)에 합당하고 성경에 기록한 모범에도 그릇됨이 없다(갈 1:22, 계 1:4, 20).
제 4 조 각 지교회(支教會) (1922년판의 오류) (1930년판의 오류)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 <u>을</u>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 2:47).	제 4 조 각 지교회(支教會)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 <u>께</u>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며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 2:47).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교회 직원</p> 제 1 조 교회 창설(創設) 직원 (1930년판의 오류)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 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選拔)하시(시 2:8, 계 7:9) 한 몸(고전 10:17)이 되게 하셨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교회 직원</p> 제 1 조 교회 창설(創設)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 10:1-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選拔)하시(시 2:8, 계 7:9) 한 몸(고전 10:17)이 되게 하셨다.
제 2 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u>딤펴전 3:7</u>)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제 2 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u>딤펴전 3:1-7</u>)와 집사요 (<u>딤펴전 3:8-13</u>),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제 3 조 교회의 임시 직원 (1930년판의 오류) 1. 전도사 남 <u>녀</u> 전도사를 _____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제 3 조 교회의 임시 직원 1. 전도사 남 <u>여</u> 전도사는 부정기 임시 직원으로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방조하게 한다.	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
2) 자격 : 신학생과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 를 졸업한 자는 필답 고사를 면제한다. (1964년판의 유류)	2) 자격 : 신학생과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인가 받은 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을 졸업한 자는 필답 고사를 면제한다.
2. 전도인 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1930년판의 오류) (1958년판의 유류)	2. 전도인 남·여 전도인은 부정기 임시직원으로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유급 사역자이니 ,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과 협의하며 보고한다.
3. 권사(勸師) (2014년 판의 오류) 1)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 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③ 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u> </u> 정년(만70세)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 (단, 은퇴 후에는 은퇴권사가 된다.) 3) 명예 권사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 받지 못한 권사 다, 5) 명예 권사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u> </u> 임명할 수 있다.	3. 권사(勸師) 1)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 자와 환난을 당 한 자,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③ 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만70세) 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 (단, 은퇴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3) 명예 권사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 받지 못한 권사 이다, 4) 은퇴 권사 연로하여 사임하고 퇴임한 권사이다 5) 명예 권사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 된 자를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4. 남·여 서리 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 녀 로 선정하여 집사 <u> </u>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4. 남·여 서리 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 여 중에서 선정하여 집사 의 직무를 하게 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다.
제 4 조 준 직원(準職員)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1.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 로 <u> </u>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제 4 조 준 직원(準職員)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 직원이다. 1.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 에 합격한 후 노회에서 강도 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제4장 목사 제 1 조 목사의 의의(意義) (1922년 판의 오류) (1930년판의 오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 함 을 받아 그	제4장 목사 제 1 조 목사의 의의(意義)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任職)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 <u>니</u> 교회의 가,,,,, 4. 하나님 <u>의</u>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2:1), 7. 죄로 침륜 <u>할</u>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	리 하는 자 <u>이니</u> 교회의 ,,,,,, 4. 하나님 <u>이</u>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계2:1), 7. 죄로 침륜(沈淪) <u>하는</u>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
제 2 조 목사의 자격 (1930년판의 오류)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 <u>가</u>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u>자</u> 로 연령은 만29세 이상 <u>자</u> 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27세 이상 <u>자</u> 로 한다(답전 3:1~7). (1966년판의 오류)	제 2 조 목사의 자격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u>자</u> 로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u>남</u> 자로 연령은 만 29세 이상 <u>으로</u>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 <u>으로</u> 한다(답전 3:1~7).
제 3 조 목사의 직무 (1922년 판의 오류) (1930년 판의 오류)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u>다른</u>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u>교회</u> 는 저희 <u>재능</u> 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 목사가 <u>지교회</u> 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u>대리</u> 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u>고시</u> 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000년판의 오류) (1976년판의 오류)	제 3 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u>특수한</u>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u>노회</u> 는 저희 <u>은사</u> 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밖에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 목사가 <u>지교회</u> 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 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u>대표</u> 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u>문답</u> 하고 교우를 심방 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며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u> </u>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u> </u> 돌아보며 <u> </u>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1976년판의 오류) (1993년판 오류)	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u>교사의</u>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u>그 학생들을 돌보며 영혼을</u>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 <u>써야</u> 한다.
4. 목사가 기독교 <u>신문</u> 이나 <u>서적</u> 에 관한 <u>사무</u> 를 <u>시무</u> 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u>덕의(德義)</u> 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힘 <u>써야</u> 한다.	4. 목사가 기독교 <u>신문</u> 이나 <u>서적</u> 에 관한 <u>사역</u> 에 <u>종사</u> 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u>덕성과 신의</u> 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도록 힘 <u>써야</u> 한다.
5. <u>기독교 교육 지도자</u> 로 목사나 노회가 지교회나	5. 목사가 <u>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와</u> 관계되는 기독교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1930년판의 오류)</p> <p>6. 강도사가 위에 2, 4, 5항의 직무를 당할 때 노회의 <u>고시를 받고</u> 지교회 <u>목사가 될</u>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2000년판의 오류)</p>	<p>교 교육 기관에서 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p> <p>6. 강도사가 위에 2, 4, 5항의 직무를 담당하고자 하면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를 시무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p>
<p>제 4 조 목사의 칭호 (1930년판의 오류)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p> <p>1. 위임 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중 하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p>	<p>제 4 조 목사의 칭호 목사가 그 담임한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p> <p>1. 위임 목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교회를 돌보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p>
<p>2. 시무 목사. 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u>3분의 2</u>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p> <p>단,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u>연기를 청원할 때에는</u>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p>	<p>2. 시무 목사. 조직 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p> <p>단, 미조직 지교회에서 시무 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시무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p>
<p>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 (2018년판의 오류)</p>	<p>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시무 목사이니 당회의,,,,,</p>
<p>4. 원로 목사.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성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p>	<p>4. 원로 목사.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를 사면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성하고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허락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5. 무임 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 <u>니</u> 노회에서 <u>언권이</u> 있으나 <u>가부권</u> 은 없다. (1930년판의 오류)	5. 무임 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 <u>이니</u> 노회에서 <u>언권은</u> 있으나 <u>결의권</u> 은 없다.
6. 전도 목사.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 <u>을</u> 인도도 한다. <u>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u> (2000년판의 오류)	6. 전도 목사. 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 <u>회</u> 인도도 한다.
8. 군중 목사. 노회에서 안수 <u>를</u> 받고 배속된 군인 교회에서 <u>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u> 한다. (1960년판의 오류)	8. 군중 목사. 노회에서 안수 <u>임직을</u> 받고 배속된 군인 교회에서 <u>전도하며 목회하는 목사이다.</u>
11.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 <u>은</u> 목사이다.(1995년판오류)	11.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 <u>는</u> 목사이다.
12. 은퇴 목사.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 <u>한</u> 목사 <u>로</u> 한다.(2000년판의 오류)	12. 은퇴 목사. 목사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면 <u>하고</u> 퇴임한 목사이다.
제5장 치리 장로	제5장 치리 장로
제 4조 장로의 직무	제 4 조 장로의 직무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u>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u>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1930년판의오류)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u>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u>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 할 자가 <u>있는</u>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1993년판의 오류)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 할 자가 <u>있을</u>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 5조 원로 장로	제 5조 원로 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u>결의</u> 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에서 <u>투표수 과반수</u> 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 6 조 은퇴 장로	제 6 조 은퇴 장로
연로하여 <u> </u> 퇴임한 장로이다.	연로하여 사임하고 <u>퇴임</u> 한 장로이다.
제 7 조 협동 장로	제 7 조 협동 장로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p>	<p>무임 장로 중에서 당회 의결로 협동 장로로 위촉을 받아 그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집사(執事)</p> <p>제 1 조 집사직(職)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 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按手)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恒存)직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집사(執事)</p> <p>제 1 조 집사직(職)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자 입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按手)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恒存)직이다.</p>
<p>제 2 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分別력이 있어 존송(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후전 3:8~13).</p>	<p>제 2 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分別력이 있어 존송(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 된 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딤후전 3:8~13).</p>
<p>제 3 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 한다(행 6:1~3).</p>	<p>제 3 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 한다(행 6:1~3).</p>
<p>제 4 조 집사의 칭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무 집사: 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 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 3. 은퇴 집사: 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4. 무임 집사: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만70세 미만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 	<p>제 4 조 집사의 칭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무 집사: 본 교회에서 임직 혹은 위임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 3. 은퇴 집사: 연로하여 사임하고 퇴임한 집사 4. 무임 집사: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위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만 70세 미만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 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위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 집사가 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교회 예배 의식(儀式)</p> <p>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遵守)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교회 예배 의식(儀式)</p> <p>교회는 마땅히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遵守)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6. 성찬(고전 11:23~28) (1964년판 오류)</p> <p>9. 헌금(행 11:27, 30, 고전 16:1~14, 갈 2:10, 6:6)</p> <p>10. 권징(勸懲)(히 13:17, 살전 5:12~13, 고전 5:4~5, 딤편 1:20, 5:20)</p> <p>11. 축복(고후 13:13, 엡 1:2)</p>	<p>6. 성찬(고전 11:23~29)</p> <p>9. 헌금(행 11:27, 30, 고전 16:1~14, 갈 2:10, 6:6~7)</p> <p>10. 권징(勸懲)(히 12:7~8, 살전 5:12~14, 고전 5:4~5, 딤편 1:20, 5:20)</p> <p>11. 축복(고후 13:13, 엡 1:2)</p>
<p>제8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p> <p>제 1 조 정치의 필요</p> <p>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p> <p>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1964년판의 오류)</p>	<p>제8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p> <p>제 1 조 정치의 필요</p> <p>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 14:40).</p> <p>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한즉 교회 치리권은,</p>
<p>제 3 조 치리회의 회집</p> <p>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p>	<p>제 3 조 치리회의 회집</p> <p>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하며 폐회한다.</p>
<p>제 4 조 치리회의 권한</p> <p>교회 각 치리회는,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 15:1, 32). (1976년판의 오류)</p> <p>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享有)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收合)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規例)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나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 18:15~17, 고전 5:4~5). (1964년판의 오류) (1930년판 오류)</p>	<p>제 4 조 치리회의 권한</p> <p>교회 각 치리회는,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행 15:1~32).</p> <p>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享有)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이 허락한 권위를 따라 증거를 수합(收合)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規例)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나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마 18:15~17, 고전 5:4~5).</p>
<p>제9장 당 회</p> <p>제 1 조 당회의 조직</p> <p>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딤편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2018년판의 오류)</p>	<p>제9장 당 회</p> <p>제 1 조 당회의 조직</p> <p>당회는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면(행 14:23, 딤편 1:5) 장로 증원도 이에 준한다.</p>
<p>제 2 조 당회의 성수</p> <p>당회에,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p>	<p>제 2 조 당회의 성수</p> <p>당회에,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u>에 있어</u>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1964년판의 오류)</p>	<p>건의 경우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p>
<p>제 3 조 당회장 당회장은 ,,,,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1922년판의 오류)</p>	<p>제 3 조 당회장 당회장은 ,,,,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p>
<p>제 4 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u>사람</u>을 파송할 것이요,</p>	<p>제 4 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u>목사</u>를 파송할 것이요,</p>
<p>제 5 조 당회의 직무 2. 교인의 입회와 <u>회회</u>. (1964년판의 오류) 학습과 입교할 자를 <u>고시</u>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u>고시하여</u>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 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u>제명</u>도 한다. 3. <u>예배와 성례 거행</u>.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u>성례</u>를 시행한다.</p>	<p>제 5 조 당회의 직무 2. 교인의 입회와 <u>전출입</u>. 학습과 입교할 자를 <u>문답하여 작성(酌定)</u>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u>문답하여 입교하게 하여</u>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 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u>제적</u>도 한다. 3. <u>예배와 성례 거행</u>.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u>성례</u>를 시행한다.</p>
<p>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u>승인과 고시한</u> 후에 임직하며, (1930년판의 오류) 5. 각 항 현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현금 수집할 <u>날짜</u>와 방침을 작성한다. (1960년판의 오류) 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u>중</u>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u>신문</u>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u>수찬정지(受餐停止)</u>, <u>제명(除名)</u>, <u>출교(黜教)</u>를 하며 ... (1976년판의 오류)</p>	<p>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u>노회의 고시에 합격한</u> 후에 임직하며</p> <p>5. 각 항 현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현금 수집할 <u>일시(日時)</u>와 방침을 작성한다. 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u>교인</u>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u>신문</u>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u>정직(停職)</u>, <u>면직(免職)</u>, <u>수찬정지(受餐停止)</u>, <u>제명출교(除名黜教)</u>를 하며</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8. 노회에 <u>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u> 노회에 <u>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u> 청원을 제출하며,,,,,	8. 노회에 <u>장로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u> 노회에 <u>총대 장로를 선정하여 파송하며</u> 청원을 제출하며 ,,,,
제 6 조 당회의 권한 (1964년판의 오류) 당회는 예배 모범에 <u>의지</u> 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	제 6 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u>의하여</u>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
제 7 조 당회 회집 (1922년판의 오류)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 장로 <u>반수(半數) 이상</u> 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u>소집하되</u> ,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	제 7 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 장로 <u>과반수(過半數) 가</u>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는 <u>당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u>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
제 8 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u>받는다.</u>	제 8 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u>받아야 한다.</u>
제 9 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備置) <u>한다.</u> 3. 책별 및 해별 <u>인</u> 명부(책별, 해별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 <u>인</u>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 <u>인</u>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연월일 기입) 8. 유아 <u>세례</u>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제 9 조 당회 비치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備置) <u>해야</u> 한다. 3. 책별 및 해별 <u>교인</u> 명부(책별, 해별 년월일 기입) 4. 별 명부(<u>교회 권징 제50조 1.2항</u>) 5. 별세 <u>교인</u>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 <u>교인</u>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월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연월일 기입) 8. 유아 및 어린이 세례 <u>교인</u>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월일 기입),,,,
제 10 조 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나,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u>치리권은</u> ,,,, (1964년도판의 오류)	제 10 조 연합 당회 한 지역에 당회가 2개 이상,,,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고,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에 <u>치리권은</u> ,,,,
제10장 노회 제 1 조 노회의 요의(要義) (1930년판의 오류) <u>그리스도의 몸된</u>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사도 시대 <u>노회와</u> 같은 회가 있었나니 <u>교회가</u>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u>있</u> 던 것은 모든 성경에 <u>확연하다</u>)(행 6:5~6,,,,,) ,,,, 노회가 <u>있</u>	제10장 노회 제 1 조 노회의 요의(要義) 우리 <u>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된</u>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 (사도시대 <u>교회에도</u>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으니 <u>예루살렘</u>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u>있었던</u> 것은 모든 성경에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는 증거가 있다,,,,	확연하다)(행 6:1~6,,,),,, 노회가 있었던 증거가 있다,,,
제 2 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제 2 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제 3 조 회원 자격 각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제 3 조 회원 자격 각 지교회 위임 목사와 시무 목사, 부목사와 준종 목사와 군 선교사, 교육 목사와 선교사, 전도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한 정회원이 되고, 그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4 조 총대 _____	제 4 조 총대 장로
제 5 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일시(日時)와 장소에 정회원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고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6 조 노회의 직무 (1922년판의 오류)(1930년 판의 오류) (1993년판의 오류) 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 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 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전 6:1, 8, 딤편 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1993년판의 오류) (1969년판의 오류)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 24)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0).(1964년판의	제 6 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지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 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교회 권징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처리할 수 있다 (고전 6:1,8, 딤편 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로 보낸다. 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24)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0~36).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오류)</p> <p>5. 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u>교회</u>의 목사 <u>의</u>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p> <p>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u>올려 보내</u>며 상회에서 <u>내려 보내</u>는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 14:33, 40),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u>총대</u>를 선정 파송함과,</p> <p>7. 목사 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u>권징 조례</u>, 예배 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p> <p>9. 노회는 ...,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u>교회</u>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처리하는 것을,....</p>	<p>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u>지교회</u>의 <u>목사 청빙과</u>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p> <p>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u>제출</u>하며 상회에서 <u>하송(下送)</u>하는 공한(公翰)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 14:33, 40), 전도 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u>에</u>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p> <p>7. 목사 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u>교회 권징</u>, 예배 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p> <p>9. 노회는,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u>지교회</u>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처리하는 것을,....</p>
<p>시찰 위원 <u>은</u> 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傳)하지 못하<u>고</u> 노회가 모이지 아니 하는 동안 <u>임시</u> 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u>지방</u>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u>봉급</u>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p>	<p>시찰 위원<u>회는</u> 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傳)하지 못하<u>며</u> 노회가 모이지 아니하는 동안 <u>사무</u> 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u>지역</u>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u>생활비</u>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p>
<p>10.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임시로 <u> </u>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p> <p>시찰 위원 <u>을</u>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p> <p>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u>시찰 과</u>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 위원 <u>은</u> 그 <u>구역</u>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u> </u>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1960년판의 오류) (2000년판의 오류)</p> <p>11. 시찰 위원 <u>은</u> 가끔,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u> </u>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p>	<p>10.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임시로 <u>설교할</u>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p> <p>시찰 위원<u>회를</u>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p> <p>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 <u>위원회와</u> 협의할 수 있다. 시찰 위원<u>회는</u> 그 <u>지역</u> 안 교회 형편과 위탁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u>교인</u>이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은 침해하지 못한다.</p> <p>11. 시찰 위원<u>회는</u> 가끔,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u>소속 각 회의</u> 대표자들이 제출하는 문의(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다.	
<p>제 7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別世)와 <u> </u>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分立), 합병과 <u> </u> 지방 안 각 교회 정황(情況)과 처리하는 일반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p>	<p>제 7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 임직과 이명과 별세(別世)와 목사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分立), 합병과 폐지 및 지역 내 각 교회 정황(情況)과 처리하는 일반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p>
<p>제 8 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시무 목사 (2) 무임 목사 (3) 원로 목사 (4) 공로 목사 (5) 전도사 (6) 목사 후보생 (7) 강도사 (1964년판의 오류)</p>	<p>제 8 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위임 목사 (2) 시무 목사 (3) 부목사 (4) 군중 목사 (5) 군 선교사 (6) 교육 목사 (7) 선교사 (8) 전도 목사 (9) 교단 기관 목사 (10) 무임 목사 (11) 원로 목사 (12) 은퇴 목사 (13) 목사 후보생 (14) 강도사</p>
<p>제 9 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 <u> </u> 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u> </u>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1930년판의 오류)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전기(先期)하여 ,,,</p>	<p>제 9 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일시(日時)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 이상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회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를 소집 해야 한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일시 (日時)와 장소를 개회 10일 전기(先期)하여 ,,,</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대 회</p> <p>제 1 조 대회 조직 대회는 1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u> </u>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한다. 총대는 매 5당회에 목사 <u> </u> 장로 각 1인 비율로 파송하며 5당회가 미급되고 3당회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택하고 3당회가 미급(未及)되는 노회는 목사 <u> </u>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단, 1당회에 총대 목사 <u> </u>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대 회</p> <p>제 1 조 대회 조직 대회는 1지역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한다. 총대는 매 5당회에 목사·장로 각 1인 비율로 파송하되 5당회가 미급(未及) 되고 3당회 이상이면 목사·장로 각 1인씩 더 택하고 3당회가 미급되는 노회는 목사·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단, 1당회에 총대 목사·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할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제 2 조 개회 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u> </u> 목사 7인과 <u> </u>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p>	<p>제 2 조 개회 성수 예정한 일시(日時)와 장소에 총대 목사 7인과 총대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p>
<p>제 4 조 대회 권한과 직무 (1964년판의 오류)</p> <p>1. 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u> </u> 상고를 수리 처리한다.</p> <p>4. 각 노회에 <u> </u> 법규(法規)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p> <p>5.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分設) <u> </u>하며 노회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1964년판의 오류)</p> <p>7. 대회는 공소, 소원, 공소, <u> </u> 상고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든지 또한 하회에 반환할 수 있다. (1964년판의 오류)</p> <p>8. 대회에 제기한 상고, <u> </u> 공소, 문의의 안전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最終審議)회가 된다.</p> <p>9. 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한 데 대하여 불복 상고한 것이나 노회에서 제출한 문의 같은 문서(文書)를 받은 후에야 재판할 수 있다.</p> <p>10. 대회가 하회(下會)에 대하여 만일 불법한 사건이 있는 줄로 아는 때는 상고하는 일이 없을 지라도 ,,,,,</p> <p>11.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 종래대로 재판한다. 재판국 개회 성수는 국원 4분의 3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여 재판국 판결은 법규에 대한 사건 외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회가 직접 재판회로 다시 일일이 재판한 후에 재판국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 4 조 대회 권한과 직무</p> <p>1. 노회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위탁 판결과 상소를 접수 처리한다.</p> <p>4. 각 노회에서 법규(法規)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p> <p>5.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分立), 폐지하며 노회 지역을 변경 할 수 있다.</p> <p>7. 대회는 소원, 항소, 위탁 판결, 상소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든지 또한 하회에 환송할 수 있다.</p> <p>8. 대회에 제기한 상소, 소원, 위탁 판결의 안전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最終審議)회가 된다.</p> <p>9. 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한 데 대하여 불복 상소한 것이나 노회에서 제출한 위탁 판결 청구를 받은 후에야 재판할 수 있다.</p> <p>10. 대회가 하회(下會)에 대하여 만일 불법한 사건이 있는 줄로 아는 때는 상소하는 일이 없을 지라도 ,,,,,</p> <p>11.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 교회 권징대로 재판한다. 재판국 개회 성수는 국원 4분의 3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중 과반수는 목사라야 한다. 대회는 재판국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대회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도록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 5 조 대회 회집 대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고 필요한 때는 임시회와 계속회도 할 수 있다. 임시회는 2개 노회 <u> </u>의 목사 장로 각 3인 <u> </u>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u> </u> 임시회를 소집 <u> </u> 한다. 임시회는 개회 10일 전기하여 회집 통지서와 의</p>	<p>제 5 조 대회 회집 대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고 필요한 때는 임시회와 계속회도 할 수 있다. 임시회는 2개 노회 이상의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회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는 개회 10일 선기하여 회집 통지서</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안을 관하 각,....	와 의안을 관하 각,....
회원에게 통고하고 통지(通知)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通知)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 6 조 <u>회</u> 록 및 보고	제 6 조 대회 회록 및 보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총 회</p> <p>제 1 조 총회의 정의(定義)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 <u>니</u>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1969년판의 오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장 총 회</p> <p>제 1 조 총회의 정의(定義)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이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p>
<p>제 2 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u>목사</u>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u>선거</u>하여 단, 7당회 <u>못</u>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u>장</u>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u>장</u>로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u>장</u>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 2 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역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로 선거하여 단, 7당회 가 못되는 경우 4당회 이상에는 목사·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 3 조 총회의 성수 (1964년판의 오류) (1922년판의 오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 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u>장</u>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p>	<p>제 3 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일시(日時)와 장소에 노회 과반수와 총대 목사·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p>
<p>제 4 조 총회의 직무 (1922년판의 오류) (1964년판의 오류) 총회는 ,,,,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코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p>	<p>제 4 조 총회의 직무 문의 총회는 ,,,,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와 소원과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p>
<p>제 5 조 총회의 권한 (1930년판의 오류)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u>정치</u>, <u>권징 조례</u>,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u>오해</u>와 ,,,,</p>	<p>제 5 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교회 정치, 교회 권징,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교리에 대한 오해와,....</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2.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u>구역</u> 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 4.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u>상고</u> 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5. 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u>설치(設置)</u> 할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2.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u>지역</u> 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 4.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u>상소</u> 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5. 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u>둘</u> 수 있으며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제 6 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_____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	제 6 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u>예정한 일시(日時)와 장소에</u> 정례로 회집하되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
제 7 조 개회 폐회 의식(儀式) (1930년판의 오류) 총회 <u>가</u> 기도로 개회하고 <u>폐회</u> 하되 <u>폐회</u>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u>알며</u> _____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한 후에 <u>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u>	제 7 조 개회 파회 의식(儀式) 총회 <u>는</u> 기도로 개회하고 <u>파회</u> 하되 <u>파회</u>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u>알아 이에 파회를 선언하며</u>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한 후에, <u>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u>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 1 조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u>규칙</u> 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u>수</u>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u>추천</u> _____ 할 수 있다.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 1 조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u>회칙</u> 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u>수</u>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u>배수 공천</u> 할 수 있다.
제 3 조 임직 순서 (1964년판의 오류) 교회가 당회의 정한 <u>날짜</u> 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장로 혹 집사)의 근원과 성질이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u>교회 앞에서 피선(被選)자를</u>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3. 본 장로회 <u>정치</u> 와 <u>권징 조례</u> 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 하느냐?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냐? 이상 4와 5항은 <u>취임</u> 서약이다. (1993년판의 오류)	제 3 조 임직 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u>일시(日時)와 장소</u> 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장로 혹 집사)의 근원과 성질이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u>피선(被選)자를 교회 앞에</u>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3. 본 장로회 <u>교회</u> 정치와 <u>교회 권징과</u>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 하느냐?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냐? 이상 4와 5항은 <u>취임</u> 서약이다. 피선(被選)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아래와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피선(被選)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u>아무</u>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p> <p>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u>하고</u>, 피선거자를 치리 장로(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 새로이 임직<u>한</u> 자와 교인 <u>에게</u>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p>	<p>같이 서약한다.</p> <p>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u>○○○</u>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p> <p>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u>로</u>, 피선거<u>에게</u> 치리 장로(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 새로 임직을 <u>받은</u> 자와 교인들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p>
<p>제 4 조 임기 (1996년판의 오류)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u>만70세까지다</u>. 단, <u> </u>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u> </u> 과반수를 요한다.</p>	<p>제 4 조 임기 치리 장로, 집사직은 <u>종신직이며, 시무 연한은 만 70세까지이다</u>. 단, <u>시무 기간 중</u> 7년에 1차씩 시무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u>투표수</u> 과반수를 요한다.</p>
<p>제 5 조 자유 휴직과 <u> </u>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u> </u>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p>	<p>제 5 조 자유 휴직과 사면 및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u>사면 및</u>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p>
<p>제 6 조 권고 휴직과 <u> </u> 사직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휴직 혹 <u> </u>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p>	<p>제 6 조 권고 휴직과 권고 사면 및 사직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휴직 혹 <u>사면 및</u>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p>
<p>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 1 조 양성의 요의(要義) (1930년판의 오류) 목사의 증임을 연약하고 부적당(不適當)한 자에게 위임하므로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됨을 면하기 위하<u>며</u>, 또한 교회를 교도(敎導) 치리할 자의 능력을 <u>알기</u>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펴전 3:6, 딤펴후 2:2).</p> <p>이러므로 <u>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u>,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u> </u> 총회 <u> </u> 고시 합격 후 1개년 이상 노회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u>응</u> 할 수 있다.</p>	<p>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 1 조 양성의 요의(要義) 목사의 증임을 연약하고 부적당(不適當)한 자에게 위임하므로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 됄을 면하기 위하<u>여</u>, 또한 교회를 교도(敎導) 치리할 자의 능력을 <u>알아보기</u>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먼저 시험하<u>여 보아야 한다</u>(딤펴전 3:6, 딤펴후 2:2).</p> <p>이러므로 <u>신학 졸업생이 총회의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u>,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u>그 강도사는 총회 강도사 고시</u> 합격 후 1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p>
<p>제 2 조 <u> </u> 관할 (1922년판의 오류)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u> </u> 소속 <u> </u>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하에서 양성을 받는다.</p>	<p>제 2 조 목사 후보생의 관할 목사 후보생 지원자는 <u>교회가 소속한</u>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하에서 양성을 받는다.</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혹 편의(便宜)를 인하여 멀리 있는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 노회 혹 본 노회 관할 아래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출한다. 2. 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 교인 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기타(其他) 목사 됨에 합당한 자격 유무(有無)를 증명한다. (1922년판의 오류) 3.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코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본 _____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혹 편의(便宜)상 멀리 있는 다른 노회 아래서 양성을 받고자 하면 본 노회 혹 본 노회 관할 아래 있는 무흠 목사 2인의 천서를 얻어 그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천서는 그 사람의 무흠 교인 된 것과 모범적 신앙과 목사 되기에 합당한 자격 유무(有無)를 증명해야 한다. 3.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코자 할 때에는 마땅히 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 관할 아래 속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본 총회 산하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야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p>제 3 조 강도사 고시 및 인허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총회가 그 덕행(德行)이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회원 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試問)하며 성역(聖役)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p>	<p>제 3 조 강도사 고시 및 인허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 덕행(德行)이 단정함과 지교회의 무흠 입교인 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할 것이요, 총회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試問)하며 성역(聖役)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고시는 신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p>
<p>제 4 조 고시 종목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註解), 강도.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실지 _____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고시 문제를 준다. 논문, 주해(註解), 강도.</p>	<p>제 4 조 고시 종목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 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註解), 강도. 고시부장은 강도사 지원자의 실지(實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시 5개월 전에 아래와 같은 제출 과목 문제를 준다. 논문, 주해(註解), 강도.</p>
<p>제 5 조 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2. _____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 4. 주 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 에 이거할 때 는 그 노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p>	<p>제 5 조 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 인허 받을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4. 주 안에서 본 노회 치리를 복종하고 다른 노회 로 이거 할 때에는 그 노회의 치리에 복종하기로</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맹세하느뇨? (1922년판의 오류)</p>	<p>로 맹세하느뇨?</p>
<p>제6조 인허식 그 지원자가 전조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크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922년판의 오류)</p>	<p>위와 같이 서약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p>
<p>제7조 인허 후 이전 (1922년판의 오류)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본 노회 허락을 얻어 다른 노회 지방에 이거하게 되면 강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 그 노회에 드린다.</p>	<p>제6조 인허 후 이전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다른 노회 지역으로 이거 하고자 하면 본 노회에서 강도사 이명 증서를 받아 이거하는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p>
<p>제8조 인허 취소 강도사가 4년간 강도하는데 <u> </u>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는 결의에 의하여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1964년판의 오류)</p>	<p>제7조 인허 취소 강도사가 4년간 강도 하는 데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의 결의로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p>
<p>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목사 자격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p>	<p>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목사 임직의 요건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청빙을 받아야 목사고시 자격을 얻고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p>
<p>제2조 목사 선거 (1976년판의 오류)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p>	<p>제2조 목사 선거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p>
<p>제3조 청빙 준비 (1922년판의 오류) <u> </u> 투표하여 <u> </u> 3분의 2 <u>가</u>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동하도록 권면한 후 규칙대로 청빙서를 작성(作成)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한다)하여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드린다.</p>	<p>제3조 청빙 준비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 이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 투표가 일치하든지 혹 거의 일치하든지 혹 대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합동하도록 권면한 후 례대로 청빙서를 작성(作成)하여 각 투표자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반대자의 수와 그 사람들의 형편도 자세히 기록한다)하여 청빙서와 함께</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노회에 제출한다.
<p>제 4 조 청빙 서식 OO곳 OO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 목사(혹 시무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p>	<p>제 4 조 청빙 서식 OO곳 OO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 목사(혹 시무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 기간 중 본 교인들이.....,</p>
<p>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날인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귀하.</p>	<p>년 월 일 각 교인 연서 날인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OOO 목사 귀하.</p>
<p>제 5 조 청빙 승낙</p>	<p>제 5 조 청빙과 승낙</p>
<p>제 6 조 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그 노회가 가합(可合)한 줄로 인정할 때 는 청빙 받은 자에게 전함이 옳으니 목사 혹 강도사가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p>	<p>제 6 조 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그 노회가 가합(可合)한 줄로 인정될 때에는 청빙 받은 자에게 전함이 옳으니 목사 혹 강도사가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p>
<p>제 7 조 서약 변경 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 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 한다.</p>	<p>제 7 조 서약 변경 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생활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한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해야 한다.</p>
<p>제 8 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 서기는 즉시 해 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p>	<p>제 8 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다른 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청빙서를 본 노회에 제출하고, 본 노회가 가합한 줄로 인정하면, 청빙서를 그 노회로 송달하고 그 노회는 피빙자가 응락하면 청빙서를 피빙자에게 전달하고 이명 증서를 교부하여 이적하게 한다.</p>
<p>제 9 조 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교회나 노회 당석에서 행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할 것이다(행 13:2, 3).</p>	<p>제 9 조 임직 준비 노회는 청빙 받은 자가,교회나 노회 당석에서 행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하되 그 교회 교인들은 이를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해야 한다(행 13:2, 3).</p>
<p>제 10 조 <u> </u> 임직 예식</p>	<p>제 10 조 목사 임직 예식</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1. 서약.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u> </u>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p> <p>③ 본 장로회 <u> </u>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p>	<p>1. 서약.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노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p> <p>③ 본 장로회 교회 정치와 교회 권징과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p>
<p>2. 안수 <u> </u>. <u> </u>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청빙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꿰어 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p>	<p>2. 안수 기도. 노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서약을 마친 후에 청빙 받은 자를 적당한 곳에 꿰어 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들과 노회장이 안수 기도하여 목사로 임직한,....</p>
<p>3. 공포</p>	<p>3.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씨가 대한 예수교장로회 ○○노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p>
<p>4. 권유. <u> </u>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답후 4:1-2)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자세히 기록 <u> </u>한다.</p>	<p>4. 권면. 노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에게 권면할 것이요(답후 4:1-2) 노회는 그 사실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p>
<p>제 11 조 <u> </u>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u> </u>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964년판의 오류)</p> <p>1. 목사의 서약</p> <p>①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 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냐? (1964년판의 오류)</p> <p>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냐? 단,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 (1922년판의 오류)(1930년판의오류)</p>	<p>제 11 조 목사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일시(日時)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목사 위임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p> <p>1. 목사의 서약</p> <p>①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 교회 목사의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냐?</p> <p>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할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냐? 단,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p>
<p>2. 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p> <p>①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u> </u>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느냐? (1966년판의 오</p>	<p>2. 교인의 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p> <p>①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u> </u>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느냐?</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류)</p> <p>②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p> <p>③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1976년판의 오류)</p> <p>④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支給)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 주기로 맹세하느뇨?</p> <p>⑤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u>OO</u>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u>회장</u>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 (1964년판의 오류)</p>	<p>②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승낙하느뇨?</p> <p>③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조급(助給)하기로 작정 하느뇨?</p> <p>④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在職)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支給)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조급(助給)하기로 맹세하느뇨?</p> <p>3.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u>OOO</u>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하고 공포한 후에 노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p>
<p>제 12 조 시무 목사 권한</p> <p>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u>3</u>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1958년 판의 오류)</p> <p>2.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p>	<p>제 12 조 시무 목사의 권한</p> <p>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p> <p>2. 교단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 없고 시무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p>
<p>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1964년판의 오류)</p> <p>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u>한</u>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u>10</u>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p>	<p>제 13 조 다른 교파 교역자</p> <p>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u>필한</u> 후에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교파 목사도 같은 예(例)에 준한다. 또한 본 장 제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장 목사 전임(轉任)</p> <p>제 2 조 본 노회로 전임</p> <p>_____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 교회)에 ,,,,,</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장 목사 전임(轉任)</p> <p>제 2 조 본 노회 내의 전임</p> <p><u>어느 교회든지 본 노회에 속한 다른 지교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u>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그 교회)에,,,,,</p>
<p>제 3 조 다른 노회로 전임</p> <p>다른 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 교회와 합의,,,,,</p>	<p>제 3 조 다른 노회로 전임</p> <p>다른 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그 교회와 합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p> <p>제 1 조 자유 사면</p> <p>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u>혹</u>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허위 <u>교회</u>가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p> <p>제 1 조 자유 사면</p> <p>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u>그</u>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허위(虛位)교회가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장 선교사</p> <p>제 1 조 선교사</p> <p>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內外)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나 이런 일을 위하여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빙이 없는 이라도 선교사로 임직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u>봉급과</u> 기타 비용은 ,,,,,,</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장 선교사</p> <p>제 1 조 선교사</p> <p>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내외(內外)지를 물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나 이런 일을 위하여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빙이 없는 이라도 선교사로 임직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u>생활비와</u> 기타 비용은,,,,,</p>
<p>제 2 조 외국 선교사</p> <p>외국 선교사는 곧 본 총회와 관계 있는 선교사를 가리킴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 장로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구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 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2. 각 노회는 이명 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u>대하여</u> 지교회 일을 맡긴 때에만 그 노회에서 <u>가부 투표권</u>이 있다. 3. 본 노회가 직무를 부담하게 <u>아니한</u>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u>투표권은 없으</u> 	<p>제 2 조 외국 선교사</p> <p>외국 선교사란 곧 본 총회와 관계 있는 선교사를 가리킴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 장로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管下) 노회 지역 안에서 선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교사는 이명 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2. 각 노회는 이명 증서가 <u>접수된</u> 선교사에게 지교회 일을 맡긴 때에만 그 노회에서 <u>결의권</u>이 있다. 3. 본 노회가 직무를 부담하게 <u>하지</u> 아니한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u>언권은 있으</u>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있고 상회 총대권도 있다.</p>	<p>나 결의권은 없다.</p>
<p>4. 본 총회 산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犯過)나 본 <u>신경</u> 정치 <u>성경</u>에 위반되는 때는 <u>소관</u> 노회가 심사한 후에 언권 회원권을 탈제(奪除)한다.</p> <p>5. 외국 선교사는 <u>본 총회에서 정한</u>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p>	<p>4. 본 총회 산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犯過)나 본 장로회 <u>신경</u> 교회 정치 <u>및</u> 성경에 위반되는 때는 <u>소속</u> 노회가 심사한 후에 언권 회원권을 탈제(奪除)한다.</p> <p>5. 외국 선교사는 아래와 같이 본 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p>
<p>6. 외국 선교사에 대한 서약문</p> <p>①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느냐?</p> <p>③ 귀하는 신학상으로 말하는 신신학 및 고등 비평이나 신정통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 을 <u>항시</u> 이와 투쟁적인 처지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하느냐? (1964년판의 오류)</p> <p>⑥ 귀하는 신앙 보수는 의논이나 체계적 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u>응분적</u> 이어야 할 줄 알며 ,,,,, (1964년판의 오류)</p>	<p style="text-align: center;">< 외국 선교사에 대한 서약문 ></p> <p>①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옳게 진술한 것으로 알며 또 그대로 믿느냐?</p> <p>③ 귀하는 신학상으로 말하는 신신학 및 고등 비평이나 신정통주의 내지 자유주의 신학을 잘못된 것으로 알며,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 은 <u>항상(恒常)</u> 이와 투쟁적인 처지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줄 생각하느냐?</p> <p>⑥ 귀하는 신앙 보수는 이론이나 체계적 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u>응분적(應分的)</u>이어야 할 줄 알며 ,,,,,</p>
<p>제19장 회장과 서기</p> <p>제 1 조 회장 교회 각 치리회는 ,,,,,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 대로 한다.</p>	<p>제19장 회장과 서기</p> <p>제 1 조 회장 교회 각 치리회는 ,,,,, 그 임기는 그 회의 규례대로 한다.</p>
<p>제 2 조 회장의 직권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게 하되 의안(議案) 범위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회원 간에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議題)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p>	<p>제 2 조 회장의 직권 회장의 직권은 아래와 같다.</p> <p>①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p> <p>②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p> <p>③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p> <p>④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p> <p>⑤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p> <p>⑥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게 하되 의안(議案) 범위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⑦ 회원 간에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⑧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⑨ 가부를 물을 의제(議題)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⑩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⑪ 회장은 매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⑫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 3 조 서기 각 치리회는 ,,,,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 3 조 서기 각 치리회는 ,,,, 그 회의 <u>규례</u> 대로 한다.
제 4 조 서기의 임무 (1930년판의 오류)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u>일체 문부</u> 서류를 ,,,,	제 4 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u>문부와</u> 서류를, ,,,,
제 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 1 조 속회(屬會) 조직 지교회나 혹은 여러 지교회가 전도 사업과 자선 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u>자라기</u>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1922년판의 오류)	제 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 1 조 속회(屬會) 조직 지교회나 혹은 여러 지교회가 전도 사업과 자선 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u>자라게 하기</u>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 2 조 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u>지경</u> 안에 보급(普及)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	제 2 조 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u>지역</u> 안에 보급(普及)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
제 3 조 속회 권한 이런 각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u>임원</u> 택하는 것과 <u>재정</u>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	제 3 조 속회 권한 이런 각 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u>재정</u>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리회의 검사와 감독과, ,,,,
제 21장 의 회 (議會) 제 1 조 공동의회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u>제직회의</u>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제 21장 의 회 (議會) 제 1 조 공동의회 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에 <u>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되</u>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u>당회의 결의</u>로 소집한다.</p>	<p>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u>당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u></p>
<p>4. 회집 (1964년판의 오류) 당회는 개회할 <u>날짜</u>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p>	<p>4. 회집 당회는 개회할 <u>일시(日時)</u>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p>
<p>5. 회의(會議) (1922년판의 오류)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u>나니</u>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u>하되</u>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u>가_와</u>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u>가_로</u> 선정한다</p>	<p>5. 회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u>하되</u>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u>하고</u> 목사 청빙 투표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u>가_표</u>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u>가_표</u>로 선정한다</p>
<p>제 2 조 제직회 1. 조직 (1922년판의 오류)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u>를</u>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u>의하여</u>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와 전도사와 권사 전도인들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 교회 제직회 미조직 <u>교회</u>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p>	<p>제 2 조 제직회 1. 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는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u>따라</u>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 2. 미조직 지교회의 제직회 미조직 <u>지교회</u>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p>
<p>3. 재정 처리 (2018년판의 오류) ① 제직회는 <u>공동의회</u>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행 6:3~5). ③ 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收支)결산을 보고하며, <u>익년도(翌年度)</u>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p>	<p>3. 재정 처리 ① 제직회는 <u>교회</u>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행 6:3~5). ③ 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收支)결산을 보고하며, <u>익년도(翌年度)</u>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p>
<p>4. 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u>통상적인</u>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4. 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u>통상적인</u>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 3 조 연합 제직회 1. 조직 (1930년판의 오류) 각 <u>지방</u>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 제직회를 조직</p>	<p>제 3 조 연합 제직회 1. 조직 각 <u>지역</u>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 제직회를 조직</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p>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에 목사·전도사와 지교회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다.</p>	<p>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역 내의 목사·전도사, 지교회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다.</p>
<p>2. 직무 본 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 제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 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議定)할 수 있고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남·여 전도사와 전도인을 <u>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u></p>	<p>2. 직무 본 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역 내 합동 제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 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議定)할 수 있고 그 지역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남·여 전도사와 전도인을 <u>임용하되 전도사는 소속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2장 총회 총대</p> <p>제 1 조 총회 총대 자격</p> <p>1.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 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p> <p>2.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p> <p>3. 총대 될 장로 자격 그 회에 속한 장로 회원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2장 총회 총대</p> <p>제 1 조 총회 총대 자격</p> <p>1.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하되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더 격(隔)하여 택하지 못한다.</p> <p>2.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총회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p> <p>3. 총회 총대 될 장로 자격 그 노회에 속한 장로 회원으로 한다.</p>
<p>제 3 조 언권 회원</p> <p>3.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과 부총회장 (2018년 판의 오류)</p> <p>4. 단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p>	<p>제 3 조 언권 회원</p> <p>3.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p> <p>4.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23장 헌법 개정</p> <p>제 1 조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3장 헌법 개정</p> <p>제 1 조 교회 정치, 교회 권징,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해야 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시행한다.</p>
<p>제 2 조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 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가 채용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 한다.</p>	<p>제 2 조 신조와 요리 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 이상과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가 채용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p>

정치 (개정 전)	교회 정치 (개정 후)
	회 서기에게 보고 <u>해야</u> 한다.
제 3 조 총회는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議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 <u>이 상됨을 금한다.</u>	제 3 조 총회는 신조나 요리 문답을 개정하는 의안(議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을 <u>초 과하지 못한다.</u>
제 4 조 소속 노회 3분의 1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 <u>고</u> 그 결정은 위의 제1, 제2조를 준용(準用)한다.	제 4 조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 <u>야 하고</u> 그 결정은 위의 제 1, 제2조를 준용(準用)한다.

헌법적 규칙

개정 전	개정 후
<p>제 1 조 미조직 <u>교회 신설향 (1976년판의 오류)</u></p> <p>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u>이상</u>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u>시찰 회</u>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u>되</u>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1964년판의 오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 교회 위치 2. 신설 년 월 일 3. 장년 신자수와 가정수 4. 유년 주일 학생수 	<p>제 1 조 미조직 지교회 신설향</p> <p>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u>이상</u>이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 <u>위원회</u>를 경유(經由)<u>하여</u> 노회에 청원하여 인허를 받는다.</p> <p>만일 신자가 15인 미만<u>이거나</u>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 교회 위치 2. 신설 년 월 일 3. 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4. 유년 주일 학생 수
<p>제 2 조 교인의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인은 <u>교회</u>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1964년판의 오류) 2. 교인은 <u>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u>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p>제 2 조 교인의 의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인은 <u>교회</u>가 정한 예배 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u>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피차 협력하며 거룩한 교제와</u>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으로 협조하며,.... 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



개정 전	개정 후
<p>6. 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u>합을 순히 복종</u>하여야 한다.(1964년판의오류)</p>	<p>(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u>의한 치리에 순복</u>하여야 한다.</p>
<p>제 3 조 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u>무고히</u>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p>	<p>제 3 조 교인의 권리(權利)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u>특별한 사고 없이</u>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p>
<p>제 4 조 주일 예배회 1. <u>종용히</u>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u>감손(減損)</u>하게 하지 말 것. 4. <u>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u> 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u>말며</u> 연회나 세속적 <u>쾌락</u>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u>종교</u>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p>	<p>제 4 조 주일 예배회 1. <u>조용히</u>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u>훼손(毀損)</u>하게 하지 말 것. 4. <u>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일이니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個人)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u> 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u>못하며</u> 연회나 세속적 <u>오락</u>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 58:13~14)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u>신앙</u>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p>
<p>제 5 조 학습(學習) 1.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u>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u> 자는 학습인 <u>고시를</u> 받을 자격이 있다.</p>	<p>제 5 조 학습(學習) 1.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 이상 된 자는 <u>학습 문답을</u> 받을 자격이 있다.</p>
<p>제 6 조 성례(聖禮) 1. 신앙이 <u>독실하고 학습 인</u>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만 6세까지 유아(乳兒) 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u>혹은 입교인이면</u>)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p>	<p>제 6 조 성례(聖禮) 1. 신앙이 <u>신실하고 학습 교인</u>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한 <u>자로서 그 믿음이 진실하게 여겨지는 자는 세례 문답 후 세례를 받을 수 있다.</u> 2. 만 6세까지 유아(乳兒) 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p>
<p>제 7 조 교회의 선거 투표</p>	<p>제 7 조 교회의 선거 투표</p>

개정 전	개정 후
<p>1. _____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人爲的)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p>	<p>1. 교회의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행할 일이니 누구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人爲的)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을 금한다.</p>
<p>3. _____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투표 정원(定員) 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 수 이내를 기입(記入)한 표는 유효(有效)표로 정한다.</p> <p>4. 지정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 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 표는 총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2000년판의 오류)</p>	<p>3. 한 표에 정원수를 연 기명(連記名)하는 투표에서 기명된 수가 정원수에 미달된 표는 유효표로 하되 정원(定員) 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표는 무효표로 한다.</p> <p>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지 표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지 표는 총표수에 계입(計入)하지 않는다.</p>
<p>제8조 무임(無任) 집사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p>	<p>제 8 조 무임(無任) 집사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 가 된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p>
<p>제 9 조 무임 장로 2.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p>	<p>제 9 조 무임 장로 2.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도 성찬 나누는 일을 맡길 수 있다.</p>
<p>제 10 조 권찰(勸察) 1. 제직회원 이의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2. 권찰의 임무는 _____ 구역을 정하고(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定期) 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한다.</p>	<p>제 10 조 권찰(勸察) 1. 제직 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여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형편에 따라 제직 회원에게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2. 권찰의 임무는 당회가 획정한 구역을 (1구역은 약 10가정) 남 ·여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定期) 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제 11 조 혼상례(婚喪禮)</p> <p>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u>부(夫)</u>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p> <p>4.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故人)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u>잘</u>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함이 정당하다.</p> <p>5.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香)을 사르거나 배례(拜禮)하는 일은 금한다.</p>	<p>제 11 조 혼 상례(婚喪禮)</p> <p>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u>분부(夫婦)</u>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p> <p>4. 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故人)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u>잘</u>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追念)함이 정당하다.</p> <p>5.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香)을 사르거나 배례(拜禮)하는 일은 금한다.</p>
<p>제 12 조 병자에게 안수</p> <p>교회에서 헌법에 <u>의지하여</u> 성직(聖職)을 받은 자 외에 <u>병자를 위하여</u>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p>	<p>제 12 조 병자에게 안수</p> <p>교회에서 헌법에 <u>의해</u> 성직(聖職)을 받은 자 <u>외에는</u>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u>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고 교훈한다.</u></p>
<p>제 13 조 문서 비치</p> <p>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文書)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p> <p>1. 교인의 각종 명부 2. 당회록 3. <u>공동 회의록</u> 4. 재판 회록</p> <p>5. <u>제직회록과 각 단체 기관 회록</u></p>	<p>제 13 조 문서 비치</p> <p>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文書)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p> <p>1. 교인의 각종 명부 2. 당회록 3. <u>공동 의회록</u> 4. 재판 회록 5. 제직 회록과 <u>교회 소속 각 기관 회록</u></p>

권징조례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제1장 총론</p> <p>제 1 조 권징의 의의 (2000년판의 오류)</p> <p>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u>의</u>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u>권고</u>) 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1950년판의 오류)</p>	<p>제1장 총론</p> <p>제 1 조 권징의 의의</p> <p>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u>과</u>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u>眷顧</u>) 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p>
<p>제 2 조 권징의 목적</p> <p>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p>	<p>제 2 조 권징의 목적</p> <p>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p> <p>「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하였다. (1922년판의 오류)</p>	<p>자 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와 화목하게 하려고 해보지 않은 자의 고소는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p> <p>「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하셨다.</p>
<p>제 10 조</p> <p>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중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p>	<p>제 10 조 화해의 중용</p> <p>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중용(從憑)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p>
<p>제 11 조</p> <p>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p>	<p>제 11 조 치리회의 기소</p> <p>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p>
<p>제 12 조</p> <p>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 할 것이다. (2018년판의 오류)</p>	<p>제 12 조 치리회의 기소 위원</p> <p>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補助者)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補助)하게 할 것이다.</p>
<p>제 13 조</p> <p>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회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1930년판의 오류)</p>	<p>제 13 조 조사 변명 신청</p> <p>교인이 다른 사람에게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회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p>
<p>제 14 조</p>	<p>제 14 조 고소 접수 전 참고 사항</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930년판의 오류)</p> <p>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p>	<p>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p> <p>1. 평소에 피고에게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이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로 이익을 얻을 자</p>
<p>제 15 조</p> <p>기소인이 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견되면 형제를 휘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언명할 것이다. (1960년판의 오류)</p>	<p>제 15 조 원고 경계</p> <p>기소인이 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한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견되면 형제를 휘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고 언명하여야 한다.</p>
<p>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p> <p>제 16 조</p> <p>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 할 것이다.(1960년판의 오류)</p>	<p>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p> <p>제 16 조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p> <p>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일시(日時)와 장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p>
<p>제 17 조</p> <p>소장은 1조에 한 가지의 범죄 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 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 결정한다.</p>	<p>제 17 조 복수(複數) 범죄의 죄증 설명서</p> <p>소장은 1조에 한 가지의 범죄 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 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제출할 것이요, 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 결정한다.</p>
<p>제 18 조</p> <p>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1960년판의 오류)</p>	<p>제 18 조 권고 과정 진술서</p> <p>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장15~17절에 기록한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p> <p>제 19 조</p> <p>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p>	<p>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p> <p>제 19 조 재판 관할과 상회의 직접 처결</p> <p>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제 20 조 _____ 치리회가 재판 회로 회집하면 _____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960년판의 오류)</p> <p>2. 원 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1922년판의 오류)</p>	<p>제 20 조 첫 재판과 피고의 연기 청원권 치리회가 재판(국)회로 회집하면 재판(국)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항만 행하여야 한다.</p> <p>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p>
<p>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p> <p>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_____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1930년판의 오류)</p>	<p>3. 소환장에는 그 재판(국)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p> <p>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p>
<p>제 21 조 _____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p>	<p>제 21 조 소환장의 송달 소환장은 그 재판(국)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p>
<p>제 22 조 _____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 조례(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p> <p>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_____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석한 대로_____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 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다.(1960년판의 오류)</p>	<p>제 22 조 피고의 재소환과 결석 재판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판(국)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합력의 사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교회 권징(제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혀야 한다.</p> <p>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석한 대로 재판하여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재판(국)회가 피고를 위하여 대변(代辯)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p> <p>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재판(국)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한다.</p>
<p>제 23 조 _____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p> <p>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930년판의 오류)</p>	<p>제 23 조 피고의 재판 전 항의의 처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재판(국)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p> <p>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의할 수 있다. (1) 그 재판(국)회가 정구에 의한 집회가 아닌</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1) 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p> <p>(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u>헌법 적용이 부적당한</u> 줄로 인정하는 때</p>	<p>줄로 인정되는 때</p> <p>(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u>헌법 적용이 부적당한</u> 줄로 인정 되는 때</p>
<p>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1930년판의 오류)</p> <p>(1) 재판을 각하(却下)하는 일</p> <p>(2) 공평 정직 <u> </u> 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改正)하기를 허락하는 일</p> <p>3. 치리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고 고소장과 <u> </u>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신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담(不答)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1922년판의 오류)</p>	<p>2. 재판(국)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항의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p> <p>(1) 재판을 각하(却下)하는 일</p> <p>(2) 공평 정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改正)하기를 허락하는 일</p> <p>3. 재판(국)회는 그 고소 건이 적법하고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신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담(不答)이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p>
<p>제 24 조 <u> </u></p> <p>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p> <p>1. 증인을 신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u> </u>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u> </u> 대하여 각각 대질(對質)할 수 있으며 ,,,,,,</p> <p>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反證)하기 위하여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p> <p>3. 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납할 수 있으나 채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p> <p>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p> <p>5.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를 연다.</p> <p>6. 본 치리회원만 합의(合議)한다.</p> <p>7. 고소장과 <u> </u>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p>	<p>제 24 조 재판의 절차</p> <p>본 재판(국)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p> <p>1. 증인을 신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게,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게 대하여 각각 대질(對質)할 수 있으며 ,,,,,,</p> <p>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反證)하기 위해서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p> <p>3. 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재판(국)회가 채납할 수 있으나 채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재판(국)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p> <p>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피고가 진술한다.</p> <p>5. 재판(국)회는 즉시 원·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를 연다.</p> <p>6. 본 재판(국)회원만 합의(合議)한다.</p> <p>7.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이 가부 결정한다.</p> <p>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 회록에 기록__한다.</p>	<p>이 가부 결정한다.</p> <p>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 회록에 기록해야 한다.</p>
<p>제 25 조 _____</p> <p>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_____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 다. 쌍방의 구술(口述)과 ,,,,,, (1960년판의 오류) (1960년판의 오류)</p>	<p>제 25 조 재판 회록과 재판 기록</p> <p>본 재판(국)회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히 기록하고 상소 될 때는 그 상소 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쌍방의 구술(口述)과 ,,,,,,</p>
<p>제 26 조 _____</p> <p>최상급회를 제한 외에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_____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_____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p>	<p>제 26 조 원·피고의 항의권</p> <p>최상급회를 제한 외에 다른 재판(국)회에서 심리하여 판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나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p>
<p>제 27 조 _____ (1960년판의 오류)</p> <p>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p> <p>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 위원 (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p>	<p>제 27 조 변호인과 방조(幫助) 위원</p> <p>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회에 참여하지 못한다.</p> <p>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 위원 (제 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幫助)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지 못한다.</p>
<p>제 28 조 _____</p> <p>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異義)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재_____한다.</p>	<p>제 28 조 재판회(국)원의 쟁론과 해결</p> <p>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국)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론(異論)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제 29 조 _____</p> <p>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 회원이 동의 _____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p>	<p>제 29 조 재판(국) 회원의 투표권 규정</p> <p>재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피고와 그 재판(국)회원이 동의하고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___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___한 다. (1960년판의 오류) (1922년판의 오류)</p>	<p>지각 혹은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p>
<p>제 30 조 _____ 원고와 피고는 등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하회(原下會)에 내려 보낸 ___다. (1922년판의 오류)</p>	<p>제 30 조 기록 등본 청구권과 판결문 하달 원고와 피고는 등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 하회(原下會)로 하송(下送)해야 한다.</p>
<p>제 31 조 _____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p>	<p>제 31 조 시벌과 해벌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예배 모범 제16, 17장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p>
<p>제 32 조 _____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 ___의 가결로 비밀 재판 회를 열 수 있다.</p>	<p>제 32 조 비밀 재판회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가결로 비밀 재판 회를 열 수 있다.</p>
<p>제 33 조 _____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고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도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p>	<p>제 33 조 피고의 직무 임시 정지 재판(국)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 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고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 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p>
<p>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 34 조 _____ 당회 ___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 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신문에 대하여 응답하 기를 불응할 때 ___는 그 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1976년판의 오류)(1960년판의오류)</p>	<p>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 34 조 피고의 불복과 시벌 당회 재판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 거나 출석하였을지라도 신문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에는 그 패려(悖戾)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해야 한다.</p>
<p>제 35 조 _____ (1976년판의 오류)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할 것이다.</p>	<p>제 35 조 당회의 시벌과 해벌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출교니 제명출교는 종시(終始)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議定)해야 한다.</p>
<p>제 36 조 _____ (1922년판의 오류)</p>	<p>제 36 조 시벌의 공포 그 죄에 대하여 작성한 것을 교회에 공포하지</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하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다.</p>	<p>아니하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에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u>하여야 한다.</u></p>
<p>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 37 조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u>그 목사됨을 인하여</u>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별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게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p>	<p>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 37 조 목사 관계 송사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과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u>그가 목사이기 때문에</u> 편호(偏護)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별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게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p>
<p>제 38 조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 <u>있어</u> 피소된 때 <u>그</u>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한 줄로 생각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u>그 본</u> 목사의 <u>노회에</u>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p>	<p>제 38 조 의지에서의 범죄 목사가 본 주소에서 떠나 먼 곳에서 피소된 때 <u>에</u> 그 본 노회가 실정은 알 도리가 없고 그 소송 발생한 지방을 관할하는 노회가 유죄한 줄로 생각 되면 그 사건의 성질이 어떠한 것을 당연히 <u>그 목사의 소속 노회로</u> 통지할 것이요, 본 노회는 그 통지를 접한 후에 그 사건이 종교상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면 즉시 재판하는 것이 옳다.</p>
<p>제 39 조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u>삼차</u>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u>처할 것이다.</u></p>	<p>제 39 조 소환 불응 피고의 처벌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으로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u>3차</u>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u>처해야 한다.</u></p>
<p>제 40 조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p>	<p>제 40 조 소송 당사자의 권리 정지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p>
<p>제 41 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이나 <u>출교할</u> 것이요 ,,,,,,</p>	<p>제 41 조 시벌의 칭호와 해벌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이나 <u>제명출교할</u> 것이요 ,,,,,</p>
<p>제 42 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p>	<p>제 42 조 이단과 교회 분립 죄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u>면직</u></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1930년판의 오류)</p>	<p>해야 한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 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p>
<p>제 43 조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으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만 처리하고 그 소송 사건을 취하(取下)하게 할 것이다.</p>	<p>제 43 조 고소 취하 명령권 노회가 심사한 결과 그 안건이 사소한 사건이요 교인들도 그의 반성을 족한 줄로 알고 목사 시무에도 구애됨이 없어 보이면 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만 처리하고 그 소송 사건을 취하(取下)하게 중용(懲濼)한다.</p>
<p>제 44 조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해직을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여 그 소재지 치리회의 관찰에, 교역에 중사함이 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 는 목사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행사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 받은 치리회가 행사할 것이다.</p>	<p>제 44 조 목사 면직과 복직 악행을 인하여 목사직 면직을 당한 자가 깊이 회개할지라도, 오랫동안 특별히 모범이 될 만한 겸손과 덕을 세우는 행위가 뚜렷하고, 그 소재지 치리회가 관찰하여 교역에 중사함이 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줄로 확인할 때에는 목사로 임직하되 당초 면직한 치리회가 직접 임직하든지 그 회의 결의대로 위탁 받은 치리회가 임직한다.</p>
<p>제 45 조 지교회에 담임 목사 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p>	<p>제 45 조 정직 목사의 상소와 그 효능 지교회에 담임 목사 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제명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을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은 해제하지 못한다.</p>
<p>제 46 조</p>	<p>제 46 조 피소자의 직무 임시 정지</p>
<p>제 47 조</p>	<p>제 47 조 장로·집사의 재판</p>
<p>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 48 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p>	<p>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제 48 조 즉결의 대상과 피고의 권한 누구든지 재판(국)회 석상에서 범죄 범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재판(국)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재판(국)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p>	<p>2. 이런 경우에는 범죄 한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p>
<p>제 49 조 재판할 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청 하기를,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 자인할 때,는 당회가</p>	<p>제 49 조 성찬 불참 청원 재판할 만한 범죄가 없는 입교인이 당회에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노라고 자인할 때에는 당회가</p>
<p>제 50 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 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 교회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할 것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지방에 옮겨 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에 옮겨 기록 년월일(年月日)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3. 책별인 명부에는 시별 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1960년판의 오류)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에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 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별된 자에게는 해별되도록 힘 쓸 것이다. 	<p>제 50 조 교인의 이주(移住) 어떠한 입교인 이든지 다른 지역에 옮겨 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역 교회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지방에 옮겨 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에 옮겨 기록(년월일年月日)을 상세히 기록할 것해야 한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3. 책별 명부에는 시별 당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계수하지 않는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를 일일이 검사하여 교회 권징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별 받은 자에게는 해별되도록 힘써야 한다.
<p>제 51 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죄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이 경과하도록 일항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별할 것이다. 그 후 교인에게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출석하면 해별한다.</p>	<p>제 51 조 교회 각항 의식 불출석 교인의 처리 본 지방에 거주하는 본 교회 입교인이 뚜렷한 범죄가 없이 교회 각 항 의식을 행하는 회식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출석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이 경과하도록 일항 듣지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책별할 것이다. 그 후 교인에게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다시 교회의 각항 의식에 출석하면 해별한다.</p>
<p>제 52 조 무흠한 목사가 정제 제17장 제1조 3조에 의하여 _____ 노회에 청원을 제출하면 그 목적과 이유를</p>	<p>제 52 조 목사의 사면 및 사직 청원 무흠한 목사가 교회 정치 제17장 제1조, 제3조에 의하여 사면 혹은 사직을 노회에 청원하면 그 목적과 이유를 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제3</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상세히 알아 결정하되 제3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만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찰(觀察)에 그 목사가 단 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줄로 인정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내 것이다.</p>	<p>조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만 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찰(觀察)에 그 목사가 단 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줄로 인정되면 사직을 허락할 것이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제거하고 입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소원하는 지교회로 보내야 한다.</p>
<p>제 53 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즉시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p>	<p>제 53 조 무이명 타 교파 가입 교인의 처벌 어떠한 입교인 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이는 무례한 일이니 본 당회는 즉시 제명하고 그 사건을 본 당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p>
<p>제 54 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게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후 출교도 할 수 있다.</p>	<p>제 54 조 목사직 포기와 관할 배척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게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였으면 정직이나 면직 후 제명출교도 할 수 있다.</p>
<p>제8장 증거조 (證據調) 규례 제 55 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p>	<p>제8장 증거 조사(證據調查) 규례 제 55 조 증인 채택 재판(국)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 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p>
<p>제 56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 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1930년판의 오류)</p>	<p>제 56 조 증인의 자격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누구든지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 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재판(국)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 57 조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p>	<p>제 57 조 증인의 판단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p> <p>1. 원·피고의 친척되는 경우.</p> <p>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p>	<p>도까지 신인(信認)할 만한 여부는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p> <p>1. 원·피고의 친척인 경우.</p> <p>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받을 이해(利害) 관계에 끌려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p>
<p>제 58 조 _____</p> <p>시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 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p>	<p>제 58 조 부부간의 증언</p> <p>시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으나 재판(국)회가 강권할 수는 없다.</p>
<p>제 59 조 _____</p> <p>증거는 구두(口頭)로 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자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 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p>	<p>제 59 조 증언의 방법</p> <p>증거는 구두(口頭)로 하고 필기한 서면이나 인쇄한 문자로도 하고 직접으로 하며, 형편을 따라 간접으로도 할 수 있다.</p> <p>범죄 안건에는 한 사람의 증거뿐이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소송 안건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려우나, 소장 한 통에 ,,,</p>
<p>하였는데 매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만한 실증이면 그 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p>	<p>하였는데 매사건에 대하여 각각 다른 증인이 한 사람씩만 있을지라도 가히 믿을만한 실증이면 그 고소장은 전부 결정할 수 있다.</p>
<p>제 60 조 _____</p> <p>본회 회원 외에 선후(先後)십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p>	<p>제 60 조 증인의 동석 불허</p> <p>본회 회원 외에 선후(先後)신문할 증인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는다</p>
<p>제 61 조 _____</p> <p>증인을 십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십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십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 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p>	<p>제 61 조 증인 신문 순서</p> <p>증인을 신문하는 순서는 재판(국)회가 신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국)회 위원이 신문할 것이나, 그 사건과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하는 어투(語套)로 묻지 못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국)회의 허락을 얻은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p>
<p>제 62 조 _____</p> <p>증인을 십문하기 전에 회장은 증인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_____ 한다.</p> <p>「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p>	<p>제 62 조 증인의 선서</p> <p>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재판(국)회장은 증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p> <p>「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답할 것같이, 지금 알지 못함이 없으사 사</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直言)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밖에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하느뇨」</p>	<p>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안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사실대로 직언(直言)하며, 사실 전부를 말하며 사실 외에는 덧붙이지 아니하기로 선서하느뇨」</p>
<p>제 63 조 _____ 증인에게 신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는 다.</p>	<p>제 63 조 증인 신문 조서 증인에게 신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원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에 대한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재판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p>
<p>제 64 조 _____</p>	<p>제 64 조 서기 날인 문서의 증거 능력</p>
<p>제 65 조 _____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 회의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p>	<p>제 65 조 증인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 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 재판(국)회가 수집한 증거와 동일하게 인정한다.</p>
<p>제 66 조 _____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치리회가 목사 혹은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의 증거 조사국 위원은,,,다른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 치리회의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 한다.(1960년판의 오류) 3. 어떻게 수합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足不足)은 본 재판 회가 진행한다. 4. 증거 조사국은 수취한 증거 안에 서명 날인하여 본 재판 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p>제 66 조 증거 조사국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 · 피고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본 재판(국)회가 목사 혹은 장로 몇 명을 증거 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의 증거 조사국 위원은,,,다른 회원으로도 선정할 수 있다.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일시(日時)와 장소를 통지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 재판(국)회의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 문답과 교환 문답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이렇게 수합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足不足)은 본 재판(국)회가 결정한다. 4. 증거 조사국은 수취한 증거 안에 서명 날인하여 본 재판(국)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p>제 67 조 _____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p>	<p>제 67 조 본 회원의 증언권 본 치리회가 재판(국)회를 열 때에 본 재판(국)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증인과 ,,,,, 수 있다.	다른 증인과 ,,,,, 수 있다.
제 68 조 _____ 아무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u> </u>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제 68 조 증인의 징벌 아무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u> </u>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수 있다.
제 69 조 _____ 어느 치리회의 중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제 69 조 재심 어느 치리회의 중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제 70 조 _____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급(緊重)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u> </u>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u> </u>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를 적용한다.	제 70 조 재판 중의 새 증거 처리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급(緊重)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u> </u>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u> </u>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를 적용한다.
제9장 상소하는 규제 제 71 조 _____	제9장 상소하는 규제 제 71 조 상소의 종류
(1) 검사와 교정 제 72 조 _____ 본 교회와 <u>부속회에서</u>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부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각 상급회는 각기 관하 각 회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가 그 회록을 <u>올려 보내지 아니하면</u> 상회는 편의대로 <u>올려 보내</u> 라든지 <u>날짜</u> 를 정하여 <u>올려 보내</u> 라든지, <u> </u>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검사와 교정 제 72 조 관할 회의 보고와 독촉권 본 교회와 <u>교회 소속 각회에서</u>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부에 편입 <u>하여야 한다</u> . 당회 이상 각 상급회는 각기 관하 각 회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가 그 회록을 <u>제출하지</u>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u>제출하</u> 라든지 <u>일시(日時)</u> 를 정하여 <u>제출하</u> 라든지, <u> </u>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73 조 _____ 상회가 하회 회록을 <u>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u>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 <u>한</u>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 <u>게</u>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1966년판의오류)	제 73 조 하회록의 검사 기준 상회가 하회 회록을 <u>검사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u>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 <u>된</u>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 <u>면</u>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제 79 조 _____ (1930년판의 오류)</p> <p>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u> </u> 긴중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u> </u>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u> </u> 하회 결정이 공례(公例)나 판결례가 될 듯하거나 <u> </u>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이 아니하거나 <u> </u>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p>	<p>제 79 조 위탁 판결의 대상</p> <p>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u> </u> 긴중한 사건이나 <u> </u> 분변(分辨)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u> </u>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u> </u> 하회 결정이 공례(公例)나 판결례가 될 듯하거나 <u> </u>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이 아니하거나 <u> </u>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p>
<p>제 80 조 _____ (1922년판의 오류)</p> <p>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1)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2)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p>	<p>제 80 조 위탁의 범위</p> <p>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청구하는 것이니 (1)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2)직접 상회의 심리와 판결을 구한다.</p> <p>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리 판결을 구하는 안건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탁한다.</p>
<p>제 81 조 _____</p> <p>상회가 위탁 <u> </u>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p>	<p>제 81 조 위탁 하회 총대의 의결권</p> <p>상회가 위탁 판결 사건에 대하여 심리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p>
<p>제 82 조 _____</p> <p>상회가 하회 <u> </u>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p>	<p>제 82 조 위탁 처결의 범위</p> <p>상회가 하회의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결하거나 형편에 따라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p>
<p>제 83 조 _____</p> <p>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는 _____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요, 상회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구 _____ 한다.</p>	<p>제 83 조 위탁 판결 청구의 서류 구비</p> <p>하회가 위탁 판결을 청구할 때에는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및 마 18:15-17에 의한 진술서와 그 안건 기록을 함께 상회에 제출할 것이요, 상회가 접수하여 심리할 때에는 원·피고의 진술도 청구하며 사실심 재판을 하여야 한다.</p>
<p>(3) 소원</p> <p>제 84 조 _____ (1930년판의 오류)</p> <p>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p>	<p>(3) 소원</p> <p>제 84 조 소원의 정의와 대상 문책</p> <p>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u> </u>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u>결정에 대한 것</u>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 <u>이</u>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u>조사</u> 결정할 때까지 그 <u>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u> (1922년판의 오류)</p>	<p>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u>가 결정한 것</u>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 <u>이상</u>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u>상회가 그 소원을 심리하여 결정할 때까지 그 재판(국)회의 결정이 정지된다.</u></p>
<p>제 85 조 _____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_____ <u>이유</u> 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가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_____ <u>이유</u> 서와 그 안전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p>	<p>제 85 조 소원의 하회 기일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u>소원장과 소원 이유 설명서</u>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가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u>소원장과 소원 이유 설명서</u>와 그 안전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p>
<p>제 86 조 _____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 <u>이</u>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u>증지한다.</u></p>	<p>제 86 조 3분의 1 이상 연명소원의 특권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 <u>이상</u>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이 <u>정지된다.</u></p>
<p>제 87 조 _____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_____ <u>이유</u> _____ 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 _____ <u>한다.</u></p>	<p>제 87 조 소원의 상회 기일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u>소원장과 소원 이유 설명서</u>를 상회 서기에게 <u>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원 취하로 간주하고, 원 하회의 결정이 확정된다.</u></p>
<p>제 88 조 _____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 <u>한</u> 하회의 전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 <u>한 후</u> 그 사건을 <u>판결</u>한다.</p>	<p>제 88 조 소원건의 처리 절차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될 때에는 피소 <u>된</u> 하회의 전 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u>한 후</u> 쌍방의 공술을 청취 <u>하고</u> 그 사건을 <u>처결</u>한다.</p>
<p>제 89 조 _____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u>줄로</u>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성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u>이런</u>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u>그</u>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p>	<p>제 89 조 소원의 결정과 처리 방법의 지시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 <u>하다고</u> 인정될 때에는, 하회의 작성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u>이런</u>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u>그</u>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제 90 조 _____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제 90 조 소원 당사자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관할 하회이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방조(幫助)를 구할 수 있다.</p>
<p>제 91 조 _____ 소원이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p>	<p>제 91 조 소원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p>
<p>제 92 조 _____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회에 상고할 수 있다.</p>	<p>제 92 조 재 소원 재기권 소원자나 피소원자는 그 상급 회에 상고할 수 있다.</p>
<p>제 93 조 _____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오려 보냄이 옳고 혹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변동없이 보존하게 한다. (1960년판의 오류) (2018년판의 오류)</p>	<p>제 93 조 피소원 하회의 문서 상송 의무 피소원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제출해야 하고 혹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그 기록과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처결 이전의 권리 그대로 보존하게 해야 한다.</p>
<p>(4) 상소 제 94 조 _____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 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p>	<p>(4) 상소 제 94 조 상소의 정의 상소(上訴)는 하회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송사이니, 원 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p>
<p>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_하회 회원은 ,,,,</p>	<p>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상소가 제출되면 그 하회 회원은 ,,,,,,</p>
<p>제 95 조 _____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_이 있을 때.</p>	<p>제 95 조 상소를 제기할 사유 8. 판결 중에 오착이나 불공평함이 있을 때.</p>
<p>제 96 조 _____ (1922년판의 오류)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_____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_능할 때에는</p>	<p>제 96 조 상소의 기일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_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전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 교부한다.</p>	<p>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전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 제출해야 한다.</p>
<p>제 97 조 _____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p>	<p>제 97 조 상소인의 상회 출석 기일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상회 서기에 제출해야 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p>
<p>제 98 조 _____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_____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p>	<p>제 98 조 상소 당사자의 회원권 정지 상소인과 피상소인 소속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p>
<p>제 99 조 _____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_____ 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소리 여부를 결정한다.</p>	<p>제 99 조 상소심의 심리 절차 상소인이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예정 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상회는 규례대로 재판해야 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에 상소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p>
<p>(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_ 또 하회_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 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_____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_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 는 _____, (1976년판의 오류) (1930년판의 오류)</p>	<p>(4) 상소 이유 설명서에 기록된 각 조를 재판(국)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표결하여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_ 또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_ 상회가 하회 판결을 변경할 때에는 그 결정과 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_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p>
<p>제 100 조 _____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_ 나가까지 결정대로 _____ 한다.</p>	<p>제 100 조 상소 제기와 하급심 판결의 효능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이 나가까지 하회의 결정대로 시행한다.</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제 101 조</p> <p>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u>올려 보낼 것이니</u> 만일 <u>올려 보내지 아니하면</u>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u>올려 보낼</u>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p>	<p>제 101 조 원심 하회의 문서 상송 의무</p> <p>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u>제출해야 하고</u>, 만일 <u>제출하지</u>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문책하고, 이를 <u>제출할</u>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u>해야</u> 한다.</p>
<p>제10장 이의와 항의서 (본 치리회 회원 상호 간에 행하는 일)</p> <p>제 102 조</p> <p>이의(異義)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u>소수(小數)가 대수(大數)의</u> 결정에 동의하지 <u>아니함</u>을 표시한다.</p>	<p>제10장 이의와 항의서 (본 치리회 회원 상호 간에 행하는 일)</p> <p>제 102 조 이의의 정의</p> <p>이의(異議)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u>소수(少數)가 다수(多數)의</u>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의 표시이다.</p>
<p>제 103 조</p> <p>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u>행사나</u>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u>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u>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p>	<p>제 103 조 항의의 정의</p> <p>항의란 이의보다 더 엄중한 것이니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u>처사(處事)나, 작정(作定)이나, 판결에 대하여 사실을 좇아 그릇됨을 밝혀 답변서와 회의록 게재를 요구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u></p>
<p>제 104 조</p> <p>이의와 항의서가 <u>합식(合式)이요</u>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록에 기입한다.</p>	<p>제 104 조 이의·항의와 답변</p> <p>이의와 항의서의 <u>양식이 합당하고</u>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록에 기입한다.</p>
<p>제 105 조</p> <p>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p>	<p>제 105 조 재 항의의 처리</p> <p>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u>본회는</u>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p>
<p>제 106 조</p> <p>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 안건은 부편 투표한 자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p> <p>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회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p>	<p>제 106 조 이의권과 항의권</p> <p>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 안건은 부편 투표한 자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p> <p>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회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본회 폐회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등분하여 본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회록에 기재하게 한다.</p>	<p>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 국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하며, 그 재판국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해야 한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등분하여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 본회 회록에 기재하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p> <p>제 107 조 _____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하였는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p> <p>제 107 조 외지 범죄와 재판 관할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역에서 범죄하였는지,.....</p>
<p>제 108 조 _____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_____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 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p>	<p>제 108 조 교인의 이명 이거와 환부 교인이 다른 지교회로 옮기는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 교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함으로써 회원권은 지속되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하지 못한다.</p>
<p>제 109 조 _____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 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 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p>	<p>제 109 조 목사의 이명 이거와 환부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노회로 옮길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노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 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그 이명서를 본 노회로 환부하면 노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된다.</p>
<p>제 110 조 _____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권 받지 못한다.</p>	<p>제 110 조 이명 이거와 이명 접수 노회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이명서를 받지 못한다.</p>
<p>제 111 조 _____ (1930년판의 오류) 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속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p>	<p>제 111 조 폐지 지교회의 교인 이명 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속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로 이속할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한 재판 사건이 있</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1966년판의 오류)</p>	<p>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p>
<p>제 112 조 _____ 노회가 폐지되면 대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대회가 계속 처리한다.</p>	<p>제 112 조 폐지 노회의 목사 이명 노회가 폐지되면 대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로 이속할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한 재판 사건이 있으면 대회가 계속 처리한다.</p>
<p>제12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 제 113 조 _____ (2000년판의 오류) (1930년판의 오류)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 옮기는 경우에 특별히 이 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납부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 발송한 교회에 통지한다.</p>	<p>제12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 제 113 조 이명 접수와 회보의 의무 교우가 다른 지교회로 옮기는 경우에 특별한 이 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해야 한다. 2. 이명서에는 옮기는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가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 발송한 교회로 통지해야 한다.</p>
<p>제 114 조 _____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 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교부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에 통지한다.</p>	<p>제 114 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의 이명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도 전조와 같이 옮기는 경우에 이명서에 기입한 대로 그 노회에 가입 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입회를 허락한 노회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노회로 통지해야 한다.</p>
<p>제 115 조 _____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2개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p>	<p>제 115 조 이주 2년 후 이명 청구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2개년 이후에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해야 한다.</p>
<p>제 116 조 _____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 개심할 수 없다. (1993년판의 오류)</p>	<p>제 116 조 범죄 사건의 발각과 개심의 연한 범죄 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은 범죄 발각 후 3년 내에 개심할 수 있고 3년을 경과 한 후에는 개심할 수 없다.</p>
<p>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p>	<p>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1. 노회 재판국 제 117 조 _____ (1922년판의 오류)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_____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_____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_____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p>	<p>1. 노회 재판국 제 117 조 <u>노회 재판회와 재판국</u>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 국원을 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_____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_____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p>
<p>제 118 조 _____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전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u>교회 헌법</u>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u>규칙</u>을 사용하되 _____ 처리 _____ 후에 _____ 보고 _____ 한다. (1922년판의 오류)</p>	<p>제 118 조 <u>노회 재판국의 권한</u>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 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전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 회와 동일하여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u>규례</u>를 사용하되 _____ 처리 <u>한 후 본 노회에</u> 보고해야 한다.</p>
<p>제 119 조 _____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_____ 의 출석으로 하되 _____ 반수 _____ 이상인 목사가 되어야 한다. (1930년판의 오류)</p>	<p>제 119 조 <u>노회 재판국의 성수</u>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u>이상</u>의 출석으로 하되 <u>그 중 과반수는 목사</u>여야 한다.</p>
<p>제 120 조 _____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_____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p>	<p>제 120 조 <u>노회 재판국의 재판 기일과 장소</u> 재판국원의 회집 <u>일시(日時)</u>와 장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_____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p>
<p>제 121 조 _____ 재판국이 본 노회 개회 시무 중에서 위탁 받은 안전을 _____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_____ 보고할 것이요 _____ 보고한 _____ 후에는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_____ 그 안전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벌할 수 있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u>재판</u>한 안전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p>	<p>제 121 조 <u>노회 재판국 판결의 효능</u> 재판국이 본 노회 개회 시무 중에 위탁받은 안전을 <u>노회가 개회 시무 중에</u>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u>본 노회에</u> 보고할 것이요 _____ 보고가 채택된 후에는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u>노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u> 그 안전 전부를 재판 <u>규례</u>대로 직접 심리 처벌해야 한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u>판결</u>한 안전은 공포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p>
<p>제 122 조 _____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u>회장</u>과</p>	<p>제 122 조 <u>노회 재판 기록 등본 교부</u>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u>국장</u>과</p>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 피고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각 통씩 교부 한다.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 피고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각 통씩 교부해야 한다.
제 123 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 노회 서기에게 위탁 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 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제 123 조 노회 재판국의 보고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 노회 서기에게 위탁 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 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대회재판국 제 124 조 대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원으로 하되 상비 국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3인씩 개선한다. 1. 대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이 있으면 대회가 보결하고 대회 폐회 후에 결원되었으면 대회장이 자백하여 대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2. 대회재판국 제 124 조 대회 재판회와 재판국 대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원으로 하되 상비 국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3인씩 개선한다. 1. 대회 개회 중에 재판국에 결원이 생겼으면 대회가 보결하고 대회 폐회 후에 결원이 생겼으면 대회장이 지명하여 대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제 125 조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대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대회에 보고한다.	제 125 조 대회 재판국의 권한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과 대회에서 적용하는 규례를 사용하되 처리 후 대회에 보고한다.
제 126 조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	제 126 조 대회 재판국의 성수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라야 한다.
제 127 조 대회 재판국의 집회 날짜와 처소는 대회가 정하거나 대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정한다.	제 127 조 대회 재판국의 재판 기일과 장소 대회 재판국의 집회 일시(日時)와 장소는 대회가 정하거나 대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정한다.
제 128 조 대회 재판국의 판결은 대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 128 조 대회 재판국 판결의 효능 대회 재판국의 판결은 대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의 권리를 판결 이전의 권리 그대로 현상을 동결(凍結)할 뿐이다.
제 129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것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	제 129 조 대회 재판국의 재판 기록 등본 교부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것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 _____으로 정하 되 그 중 6인 이 목사됨을 요한다.	총회 재판국의 성수는 11인 이상 출석으로 하 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라야 한다.
제 137 조 _____ 재판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제 137 조 총회 재판국의 재판 기일과 장소 재판국의 회집 일시(日時)와 장소는 총회가 의정 하 거나, 재판국이 의정 한다.
제 138 조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능)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 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 138 조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능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 사자 쌍방의 권리를 판결 이전의 권리 그대로 현 상을 동결(凍結)할 뿐이다.
제 139 조 _____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판결문 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 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 _____한다.	제 139 조 총회 재판국 재판 기록 등본의 교부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판결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 · 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해야 한 다.
제 140 조 _____ (1930년판의 오 류) 재판국은 판결 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 게 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 _____한다.	제 140 조 총회 재판국 보고 재판국은 판결 사건을 총회 서기에게 위탁하 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 본을 본회 회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 141 조 _____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_____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 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 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 다.	제 141 조 총회 재판국 판결의 확정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도록 환부하거나·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 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142 조 _____	제 142 조 총회 재판국 비용
제 143 조 _____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제 143 조 총회 특별 재판국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 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 재판국 규례를 적용한 다.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제 144 조 _____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제 144 조 치리회 간의 소원

권징 조례 (개정 전)	교회 권징 (개정 후)
<p>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_____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 _____ 한다.</p>	<p>어느 회든지 그 동등한 치리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제기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소원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해야 한다.</p>
<p>제 145 조 _____ 어느 _____ 회든지 전조와 같이 기소하고자 하면 대리 위원을,....</p>	<p>제 145 조 대리 위원 어느 치리회든지 전조와 같이 소원하고자 하면 대리 위원을,....</p>
<p>제 146 조 _____ 소원을 접수한,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정 전부 후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 회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p>	<p>제 146 조 치리회 간의 소원 건 처리 소원을 접수한, 상당하면 피소원회의 결정 전부 후 1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소원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소원회나 피소원회는 또 그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p>